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<br>결<br>사<br>향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2. . .<br>(제 회) |                  |

문 화 재 수 리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
일 부 개 정 령 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문화체육관광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2. . .               |

법 제 처 심 사 전

## 1. 의결주문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의 자격 요건을 시·도 실정에 따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, 고유식별 정보 처리 등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한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요건을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제19조의3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2의2. 문화재수리에 참여한 인력의 명단

제26조제1항제1호 중 “입찰보증·계약보증(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)·손해배상보증·선급금지급보증·하자보수보증”을 “입찰·계약(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)·손해배상·선급금지급·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3.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

### 4. 문화재수리업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

제27조제1항 중 “노임(勞賃)”을 “임금”으로, “노임을”을 “임금을”로 한다.

제28조제5항 중 “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,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

육의 수료사항을 기록·확인해야”를 “문화재수리기술자의 전문교육 수료사항을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·관리해야”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권한을”을 “권한의 일부를”로 한다.

제3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문화재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8조의3(설계심사관의 지정) ①<br>· ②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8조의3(설계심사관의 지정) ①<br>· ② (현행과 같음)<br><u>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<br/>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과 협의<br/>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<br/>소속 공무원의 요건을 따로 정<br/>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9조의3(문화재수리 보고서의<br>내용 등) ① 법 제36조제4항에<br>서 “수리대상의 현황, 준공도면<br>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<br>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<br>다.<br>1. · 2.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<br><br>3. ~ 6. (생략)<br>② · ③ (생략) | 제19조의3(문화재수리 보고서의<br>내용 등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.<br>1. · 2. (현행과 같음)<br><u>2의2. 문화재수리에 참여한 인<br/>력의 명단</u><br>3. ~ 6. (현행과 같음)<br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26조(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<br>업 등) ① 법 제42조제5항에 따<br>른 문화재수리협회 공제사업의<br>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br>1.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일<br><u>참보증·계약보증(공사이행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26조(문화재수리협회의 공제사<br>업 등) ① -----<br>-----<br>-----.<br>1. ----- 일<br><u>참·계약(공사이행보증을 포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증을 포함한다) · 손해배상보  
증 · 선급금지급보증 · 하자보  
수보증

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⑥ (생략)

제27조(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  
임의 산정방법 등) ① 법 제50  
조제1항에 따른 노임(勞賃)에  
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문화재수  
리(하도급한 문화재수리를 포함  
한다)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  
서에 적힌 노임을 합산하여 이  
를 산정한다.

② (생략)

제28조(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  
재감리원의 전문교육) ① · ②  
(생략)

③ · ④ 삭제

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 
전문교육을 수료한 문화재수리

함한다) · 손해배상 · 선급금지  
급 ·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

2. (현행과 같음)

3.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  
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

4. 문화재수리업등에 종사하는  
사람의 생활안정과 업무상 재  
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 
공제사업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  
임의 산정방법 등) ① -----  
----- 임금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임금을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  
재감리원의 전문교육) ① · ②  
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문화재수리

기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,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에 전문교육의 수료사항을 기록·확인해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3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권한을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」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.

② ~ ⑤ (생략)

제30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 
(생략)

<신설>

기술자의 전문교육 수료사항을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권한의 일부를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0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문화재수리협회는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

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|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| 042-481-4864 |